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MLA: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LA란, 각국의 인정기관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민간 인정기관간의 협정이다. ML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공동평가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MLA 협정에 가입한 각국의 인정기관은 타국 MLA 회원 인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매자에게 해당국의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민간 인증기관인 한국인정원(KAB)에서 발행한다. 또한 한국인정원은 공공조달 및 입찰시에 해당국 인증서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도록 자국 정부에 권고하여야 한다.

IAF MLA는 현재 품질경영체제(ISO 9000) 분야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ISO 14000 및 제품인증 분야의 MLA 체결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IAF에서 승인한 지역기구인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또는 EA(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IAF MLA 협정에는 31개국 30개 인정기관과 2개 지역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KAB)이 지난 1999년 9월 29일 IAF MLA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31개 인증기관이 있다.

1. MLA 추진배경

· ISO 9001/ISO 14001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 불인정 문제 해결
동일한 지침서(ISO Guide 62)에 의거하여 동일한 국제 규격(ISO 9001, ISO 14001)에 의해 인증하나, 각국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간의 제도운영 기법 및 절차, 숙련도 및 신뢰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인증의 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성 구축이 어려움.

2. MLA의 효과

1) 외국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국제입찰시 중복인증 회피

2) 무역장벽 제거 및 잠정적 피해가능성 사전 제거 효과

3) 회원국 인정기관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 및 신뢰성을 각국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

· 필요시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

·“IAF MLA GROUP MEMBER”로고(LOGO)를 인증서에 부착함.

4) 현재 IAF의 각종 기준 문서를 ISO 및 IEC에서 인정하여, 향후 ISO 및 IEC에서 IAF의 MLA를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각국의 공동조달 및 입찰 참가시 동등한 대우 보장

3. MLA 개요 및 국제기구별 현황

· MLA는 국제적으로 IAF를 정점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PAC, EA 등 지역 MLA기구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공동평가팀의 평가를 받아 1999년 7월 27일 PAC의 MLA에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1999년 9월 27일 IAF MLA 협정에 가입하였다.

· 각국의 인정기관들은 민간 또는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조하에 MLA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조달 등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폐지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 ML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기구별 협정 가입 인정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별	IAF MLA	PAC MLA	EA MLA
국가 수	31	14	17
인정기관 수	30	13	28

4. MLA의 발효 및 세계적 확대절차

1) MLA 발효 절차

· MLA(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및 공동심사 기준 제정

· 신청국별로 회원기관 국제공동평가(Peer Evaluation) 실시

· 평가에 합격한 기관간에 MLA 서명 및 발효

· 서명국으로 MLA 그룹 결성
- 기능 : 신규 MLA신청 접수 및 평가, 가입여부 결정

· 준비가 된 회원기관별로 추가 공동심사 및 MLA 가입

2) MLA의 세계적 확대 절차

· 지역별로 MLA 추진(PAC, EA 등) 및 국제기구와 지침 · 절차 통일

· IAF MLA로 일괄 가입 추진 (비 지역기구 소속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IAF MLA가입)

· IAF의 심사를 거친 회원국을 IAF MLA 회원으로 등록하여 전세계에 홍보

3) 협정의 효력 범위

IAF의 국제평가단으로부터 방문 평가를 받아 합격한 국가의 인정기관만이 동 협정에 서명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정기관인 KAB(한국인정원)에서 1999.9.27일 동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KAB에서 지정한 31개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동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협정 적용의 한계

협정체결 당사 인정기관은 타국 인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자국의 바이어들에게 타국의 MLA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를 제공해 준다. 다만, MLA 협정이 정부간 협정이 아니고 민간기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특정국의 조달기관이나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 ♧

■ 자료: www.kab.or.kr(국내 인정기관 홈페이지)

■ 자료제공 : 박철순(건설품질관리부)
■ cspark@kict.re.kr